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u>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자투자신탁 (주식)</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u>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자투자신탁 (주식)</u>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5 년 12 월 08 일

주) 본 투자설명서는 2009년 04월 30일자로 최초 제출된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투자설명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 년 12 월 11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팎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중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미만(소규모 곤란하거나	펀드)인 경 임의해지 될 스규모펀드	경우 분신 ! 수 있으니 해당여부	:투자가 여 니, 투자 시 는 금융투	거려워 효율 소규모펀드 (설정액이 50억원 적인 자산운용이 겨부를 확인하시기 회사, 자산운용사

<u>목 차</u>

제 1	무 모	'집 또는 매줄에 관한 사항	1
	1. 2. 3. 4. 5.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집예정금액 모집의 내용 및 절차 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2 2
제 2	부 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3 4 4 5 9 10 14 16 19 25 26 32
•		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2. 3.	재무정보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8
제 4	부 집	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5
	1. 2. 3.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46
제 5	早ァ	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0
	1. 2. 3. 4. 5.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4 55 58
	n	거국 업업무사기구에 찬양 누가 기세야양	אכ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69712
종류 A	69714
종류 A-e	A9962
종류 C1	69713
종류 C2	99738
종류 C3	99741
종류 C4	99744
종류 C5	99746
종류 C-e	A9963
종류 C-w	AI176
종류 CP	92405
종류 PRS	B9615
종류 PRS-e	B9616
종류 S	AP397
종류 S-PRS	B9617
종류 S-I	B9618
종류 I	75449
종류 N	6971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60,000,000,000,000좌

-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나. 모집장소: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편드코드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69712
종류 A	69714
종류 A-e	A9962
종류 C1	69713
종류 C2	99738
종류 C3	99741
종류 C4	99744
종류 C5	99746
종류 C-e	A9963
종류 C-w	AI176
종류 CP	92405
종류 PRS	B9615
종류 PRS-e	B9616
종류 S	AP397
종류 S-PRS	B9617
종류 S-I	B9618
종류 I	75449
종류 N	6971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 사항
-최초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 따라 투자신탁 명칭
변경
(피델리티 인디아 <u>종류형 주식투자신탁 - 자</u> →피델리티 인디아 <u>증권</u>
<u> 자투자신탁 (주식)</u>)
- 펀드 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따른 해외투자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제2영업일(T+1) →제3영업일(T+2)
리면 이런 이렇게 가 든 에비 이렇게 크게 되었다. 이런
- 자본시장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방법 변경,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단서조항 추가, 과세 문구 변경,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및 손실
눈도 선정, 외국정정구역의 배배·청가 근익에 대한 미과세 예약 공료 및 근실 상계 방안 추가 등
- 종류 E 판매보수율 인하 (1.8% → 1.5%)
- 체감식으로 판매보수율 인하 및 그에 따른 종류 신설, 종류 명칭 변경 등
- 세슘 ㅋ프로 현대로 F 할 건이 못 그게 떠는 중 11 전 글, 중 11 중 중 전 2 중 중 (종류 A, 종류 E, 종류 I, 종류 CP, 종류 N →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u>종류 C4, 종류 C5,</u> 종류 I, 종류 CP, 종류 N)
- 종류 A-e 및 종류 C-e 신설
- 종류 C-w 신설
- 종류 S 신설
- 종류 PRS, 종류 PRS-e, 종류 S-PRS, 및 종류 S-I 신설
- · 한매수수료 면제: 2015년 12월 14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층
	(전 화) 02-3783-090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및 내용

해당 펀드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업무위탁범위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설립일	1990년 12월 31일			
회사주소	8 Marina View, # 35-06,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65) 6511 2200			
	팩스번호: (65) 6536 196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15년 11월말 기준)

	생년	직위	운용현황		, ,
성명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미영	1975	포트폴리오 매니저	237म	14,993 억원	[주요 경력] 2013-현재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매니저 2004-2013 피델리티자산운용 투자애널리스트 1999-2004 굿모닝신한증권 주식애널리스트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다른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태우	2007.05~2008.03
장성문	2008.03~2015.05
김미영	2015.05~현재

다.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2015년 9월 기준)

			운용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USD 백만)	주	·요 운용경력 및 이력
팀 오차드 (Tim Orchard)	1969	포트폴리오 매니저/ Head of Equities – Asia ex Japan	3	1,717.08	2008 - 2010 2002 - 2008 2001 - 2002 1995 - 2000 1995 - 2000 1992 - 1994 학력 및 자격 경제학 석사	Head of Equities, Asia ex-Japan FIL Limited, 싱가포르 Head of Equities , Asia ex-Japan FIL Limited, 홍콩 Head of Equities – Tokyo, FIL Limited, 일본 파트너/ 펀드매니저, FreeSpirit Advisors, 시드니이사/포트폴리오 매니저, 메릴린치, 싱가포르이사/주식부문 공동대표, 머큐리/메릴린치, 동경 포트폴리오 매니저, 머큐리/메릴린치, 동경 부펀드매니저, 머큐리/메릴린치, 동경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제2부, 5. 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종류형

피델리티인디아증권 모투자신탁(주식)			
<u>†</u>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종류CP			
종류PRS			
종류PRS-e			
종류S			
종류S-PRS			
종류S-I			
종류I			
종류N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설정일 및 가입자격]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 (펀드코드: 69714)	2007.05.31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A-e (펀드코드: A9962)	2014.04.14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C1 (펀드코드: 69713)	2007.05.31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C2 (펀드코드: 99738)	2011.01.17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투자자
종류 C3 (펀드코드: 99741)	2011.01.17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투자자
종류 C4 (펀드코드: 99744)	2011.01.17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투자자
종류 C5 (펀드코드: 99746)	2011.05.31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투자자
종류 C-e (펀드코드: A9963)	2015.09.01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C-w(펀드코드: AI176)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CP (펀드코드: 9240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종류 PRS (펀드코드: B9615)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PRS-e (펀드코드: B9616)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 S (펀드코드: AP397)	2014.05.07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종류 S-PRS (편드코드: B9617)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S-I (펀드코드: B9618)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종류 I (펀드코드: 75449)	2007.10.30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종류 N (펀드코드: 69715)	2007.05.31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계열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수수료]

[1134]	수수료율				
명칭			환매 수	수료 ^{5) 6)}	
(클래스)	선취 판매수수료 ¹⁾	후취 판매 수수료 ^{2) 3) 4)}	2015년 12월 11일까지	2015년 12월 14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청구시	
종류 A	1.2% 이하		30일 미만:		
6 11 A	1.2/0 9 0	-	이익금의 10%	-	
종류 A-e	0.5% 이하		30일 미만:		
ο π A-e	0.5% 9 9		이익금의 10%	=	
종류 C1			90일 미만:		
δ TF C1	रुम ८।	-	이익금의 70%	=	
종류 C2			90일 미만:		
5 TF C2	-	-	이익금의 70%	-	
종류 C3			90일 미만:		
ुम ८३	•	=	이익금의 70%	=	
종류 C4			90일 미만:		
° 0 TF C4	-	-	이익금의 70%	-	
종류 C5			90일 미만:		
रुम ८३	-	-	이익금의 70%	-	

	수수료율				
명칭			환매 수수료 ^{5) 6)}		
(클래스)	선취 판매수수료 ¹⁾	후취 판매 수수료 ^{2) 3) 4)}	2015년 12월 11일까지 환매청구시	2015년 12월 14일부터 환매청구시	
종류 C-e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w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CP	-	-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PRS	-	-	해당 없음	-	
종류 PRS-e	-	-	해당 없음	-	
종류 S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하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S-PRS	-	-	해당 없음	-	
종류 S-I	-	-	해당 없음	-	
종류 I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N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됨. 다만,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주3)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상기 명시한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주4)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음

주5)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6)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u>전환 후</u>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u>환</u>매수수료가 부과됨.

[보수]

명칭	지급비율(연간, %)			
(클래스)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	보수	보수	보수	보수
종류 A	연 0.80%	연 1.00%	연 0.04%	연 0.028%
종류 A-e	연 0.80%	연 0.37%	연 0.04%	연 0.028%
종류 C1	연 0.80%	연 1.50%	연 0.04%	연 0.028%
종류 C2	연 0.80%	연 1.40%	연 0.04%	연 0.028%
종류 C3	연 0.80%	연 1.30%	연 0.04%	연 0.028%
종류 C4	연 0.80%	연 1.20%	연 0.04%	연 0.028%
종류 C5	연 0.80%	연 1.10%	연 0.04%	연 0.028%
종류 C-e	연 0.80%	연 0.50%	연 0.04%	연 0.028%
종류 C-w	연 0.80%	없음	연 0.04%	연 0.028%
종류 CP	연 0.80%	연 0.50%	연 0.04%	연 0.028%
종류 PRS	연 0.80%	연 0.60%	연 0.04%	연 0.028%
종류 PRS-e	연 0.80%	연 0.30%	연 0.04%	연 0.028%
종류 S	연 0.80%	연 0.35%	연 0.04%	연 0.028%
종류 S-PRS	연 0.80%	연 0.18%	연 0.04%	연 0.028%
종류 S-I	연 0.80%	연 0.03%	연 0.04%	연 0.028%
종류 I	연 0.80%	연 0.10%	연 0.04%	연 0.028%
종류 N	연 0.80%	없음	연 0.04%	연 0.028%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주식)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를 하지 아니함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명칭: **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모투자신탁 (주식)**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6일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인도에 상장된 인도 기업 주식 및 인도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주식(이하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투자신탁 자산을 인도 관련 주식(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에서 정의됨)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를 하지 아니함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인도에 상장된 인도 기업 주식 및 인도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주식 (이하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또한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인도 관련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은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인도 관련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외화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합니다.

-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3. 금전의 차업은 그 차업금의 총액이 차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1).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8. 가.(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외국주식	60% 이상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 지분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법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주식"이라합니다)	
2) 인도 관련 주식	60% 이상	인도에 상장된 인도 기업 또는 인도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외국기업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제 1 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인도 관련 주식"이라 합니다)	
3) 외국채권	40% 이 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제 4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합니다)의 성질을 구비한 것("외국채권")	
4) 외국자산 유동화채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자산유동화채권"이라 합니다)	
5)외국어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외국어음"이라 합니다)	
6) 국내외의 금리스왑	산출근거가 되는 🤅	어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7) 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8) 장외파생상품	10%이 ঠ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9)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사모집합투자증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합니다)	
10)외국파생결합증권		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7 항의 결합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파생결합증권"이라	
11)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	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2)환매조건부매도	환매조건부(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3)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4)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남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15)기타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단기대출(법 대여를 말합 2. 금융기관에	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법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9)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제한

(1) 당해 투자신탁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모투자신탁

-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외국파생결합증권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8. 집합투자재산을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 라.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 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가.(2)의 표의 11)호 내지 13)호의 투자한도 및 나.(2).(가)의 2호 내지 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2).(가).2.호의 본문 및 5호부터 8호 가목 및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인도에 상장된 인도 기업 주식 및 인도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해외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시가총액 전역에 걸친 종목선택에 있어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상향식 투자접근법을 구사하며 개별종목 선정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동종 업계평균 또는 시장평균 보다 더 높은 수익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탐방도 투자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영진의 과거 실적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경영진의 신뢰도, 특히 주주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로부터 가장 큰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산업 내 대표기업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업만을 따로 떼어이해하려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및 시장의 장기 트렌드를 고려하며, 이를 통해 실제적인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지수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지수에서 벗어날 용의가 있으며 그 편차는 확신수준과 밸류에이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3) 참조지수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참조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 * MSCI India Index: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인도 지수
- *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MSCI India Index 내 개별 종목에 대하여 8% 상한선을 적용한 지수

(4) 위험관리

(가) 확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외화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지 않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시장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점점 주목이 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대규모의 인구와 성장하는 주식투자문화는 이미 인도를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인도시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의 대외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 현황

※ 다음은 관련 국가 전부에 대한 정보는 아니며, 제시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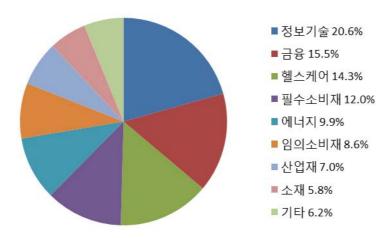
GDP	2조 669 억 달러	소비자	5.0% (2015 년 10 월)	
	(2014 년 12 월)	물가상승률		
실업률	8.6% (2014 년 12 월)	화폐	루피(INR)	
산업구조	• 농업 및 어업 18.0%, 광업 2.8%, 제조업 17.3%, 전기/에너지 2.3% 건설 8.3% 등			
	(2014 회계연도)			
	• 주요 수출품: 광물성 연료, 에너지, 보석, 귀금속, 일반차량 등			

관련 지역 정보

※ 다음은 관련 지역의 업종별 비중으로, 이 투자신탁의 참조지수에 사용된 MSCI India 8% cap Index 의 업종별 비중 정보이며, 제시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MSCI India 8% cap Index - 업종별 비중

(2015년 9월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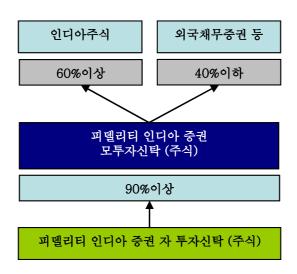
(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부 시장은 여전히 초기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지역의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및 규제와 관련된 신흥시장의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는 신흥시장에 적용되는 공통적 주안점에 대한 설명 및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할 대표적인 투자대상 시장 및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시장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투자대상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위험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며 모든 투자대상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위험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며 모든 투자대상 시장 또는 그러한 시장과 관련되는 모든 위험을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본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상에 피력된 모든 견해는 본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본 증권신고서(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작성일 이후 발생한 시장변동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흥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통적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관련위험 및 통화정책변경 통화가치절상은 선별된 섹터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현금흐름의 제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할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확실성 몇몇 신흥 시장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위축시키고 장기적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뉴프런티어 국가에 속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자본금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은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지 않는 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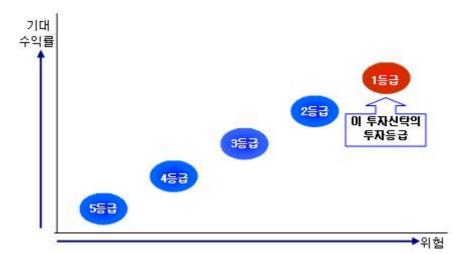
구 분	주된 투자위험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투자신탁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 등급 중 <u>1 등급</u>에 해당하는 <u>매우 높은 수준</u>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위험수준	ਪ ੀ 8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 채무증권(BB+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 용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2)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3)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혜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5)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상품심의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대상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실제 편입비를 고려하여 향후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50 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

-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나) 최소매입금액: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종류 C1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투자자
 -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투자자
 -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투자자
 -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투자자
 - 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종류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종류 C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 종류 PRS 수익증권: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종류 PRS-e 수익증권: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종류 S-PR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종류 S-I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종류 I 수익증권: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 종류 N 수익증권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해외계열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 (라)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 및 자금납입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 D+1 D+2 	D D+1 D+2 D+3 나 나 나 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5 시 경과후 (D+3 기준가 적용)	

- (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2)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 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은 1940년 미투자자문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증권은 1933년 미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상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증권은 미국법, 적용법률, 규칙 또는 해석상 등록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이상 미합중국 또는 그의 영토, 속령 혹은 관할지에서 또는 이러한 지역들의 국민이나 거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도되지 않습니다. 미국인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나. 확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가)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신탁계약,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5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라)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날(판매회사의 영업일임. 당일 포함)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제 8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5 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 9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환매청구일(D) 되는 기준가격		<mark>일(D+3)</mark> 에 공고
	-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 제9영업일(D+8	3)에 환매대금 지	급	
	D L	D+2	D+7	D	D+3	D+8
	- 환매청구 (5 시 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 (5 시 경과후)	│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명칭(클래	환매 수수료지급비율		
스)	2015년 12월 11일까지 환매청구시	2015년 12월 14일부터 환매청구시	
종류 A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A-e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2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w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CP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PRS	해당 없음	-	
종류 PRS-e	해당 없음	-	
종류 S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S-PRS	해당 없음	-	
종류 S-I	해당 없음	-	
종류 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N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u>-</u>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u>다만, 전환 후</u>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제6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모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 다.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라.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 주 이내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⑥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 1. 화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화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3. 일부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따라 황매대금 지급
 -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은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②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은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③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은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④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수익증권은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 2011년 1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종류별 수익증권 보유기간의 산정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매수한 일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관련 유의사항

- (가)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 (나)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다)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 (라)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① 위의 수익증권의 전환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제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구분	내용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간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해외
장내파생상품 등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등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一个一个						
명칭			환매수수료 ^{5) 6)}			
(클래스)	선취 판매수수료 ¹⁾	후취 판매수수료 ^{2) 3) 4)}	2015년 12월 11일까지 환매청구시	2015년 12월 14일부터 환매청구시		
종류 A	1.2 %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A-e	0.5%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1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2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e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w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P	-	-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PRS	-		해당 없음	-		
종류 PRS-e	-	-	해당 없음	-		
종류 S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하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S-PRS	-	-	해당 없음	-		
종류 S-I	-	-	해당 없음	-		
종류 I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N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 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됨. 다만,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주3)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상기 명시한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주4)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음

주5)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6)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u>전환</u>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됨.

(2) 모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선(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비용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이 발생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위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6.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보수 및 비용]

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자투자신탁 (주식)

(2015년 10월 기준)

	기그비오(서가 0/)							
	지급비율(연간, %)							
구 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합성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종류 A	0.8000	1.0000	0.0400	0.0280	0.0000	1.8680	2.1180	0.1132
종류 A-e	0.8000	0.3700	0.0400	0.0280	0.0000	1.2380	1.4777	0.1048
종류 C1	0.8000	1.5000	0.0400	0.0280	0.0000	2.3680	2.6011	0.1032
종류 C2	0.8000	1.4000	0.0400	0.0280	0.0000	2.2680	2.4909	0.0892
종류 C3	0.8000	1.3000	0.0400	0.0280	0.0000	2.1680	2.4032	0.1037
종류 C4	0.8000	1.2000	0.0400	0.0280	0.0000	2.0680	2.4038	0.1298
종류 C5	0.8000	1.1000	0.0400	0.0280	0.0000	1.9680	2.2346	0.1182
종류 C-e	0.8000	0.5000	0.0400	0.0280	0.0000	1.3680	1.4938	0.0403
종류 C-w	0.8000	0.0000	0.0400	0.0280	0.0000	0.8680	0.8680	0.0000
종류 CP	0.8000	0.5000	0.0400	0.0280	0.0000	1.3680	1.3680	0.0000
종류 PRS	0.8000	0.6000	0.0400	0.0280	0.0000	1.4680	1.4680	0.0000
종류 PRS-e	0.8000	0.3000	0.0400	0.0280	0.0000	1.1680	1.1680	0.0000
종류 S	0.8000	0.3500	0.0400	0.0280	0.0000	1.2180	1.4612	0.1079
종류 S-PRS	0.8000	0.1800	0.0400	0.0280	0.0000	1.0480	1.0480	0.0000
종류 S-I	0.8000	0.0300	0.0400	0.0280	0.0000	0.8980	0.8980	0.0000
종류 I	0.8000	0.1000	0.0400	0.0280	0.0000	0.9680	1.2428	0.1408
종류 N	0.8000	0.0000	0.0400	0.0280	0.0000	0.8680	0.8680	0.0000
지급시기	최2	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가	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모투자신탁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이 발생합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2015년 10월 기준)

	지급비율(연간, %)			
구 분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지급시기		
	(주식)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기타 비용	0.2461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비율	0.2461			
합성총보수비율	0.2461			
증권거래비용	0.1143	사유발생시		

- ※ 기타비용은 중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중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 시 예상 비용]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기준, 단위: 원)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 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7,752	714,950	1,163,887	2,497,996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33,070	794,765	1,303,784	2,816,441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5,998	447,745	747,346	1,637,673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0,442	524,804	882,413	1,945,125
종류 C1, C2, C3, C4,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2,688	731,715	1,222,224	2,644,619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 년
종류 C1, C2, C3, C4,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6,578	806,166	1,369,726	2,984,81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0,202	441,985	774,702	1,763,44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3,094	482,630	845,943	1,925,604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958	280,441	491,551	1,118,908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958	280,441	491,551	1,118,908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0,202	441,985	774,702	1,763,440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0,202	441,985	774,702	1,763,440
종류 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0,450	474,294	831,332	1,892,347
종류 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0,450	474,294	831,332	1,892,347
종류 PRS-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704	377,368	661,442	1,505,627
종류 PRS-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9,704	377,368	661,442	1,505,627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829	393,522	689,757	1,570,080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9,753	472,097	827,482	1,883,581
종류 S-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406	338,597	593,485	1,350,940
종류 S-PR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7,406	338,597	593,485	1,350,940
종류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033	290,134	508,540	1,157,580
종류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2,033	290,134	508,540	1,157,580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9,207	312,750	548,181	1,247,814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7,370	401,535	703,801	1,602,049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958	280,441	491,551	1,118,908
종류 N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8,958	280,441	491,551	1,118,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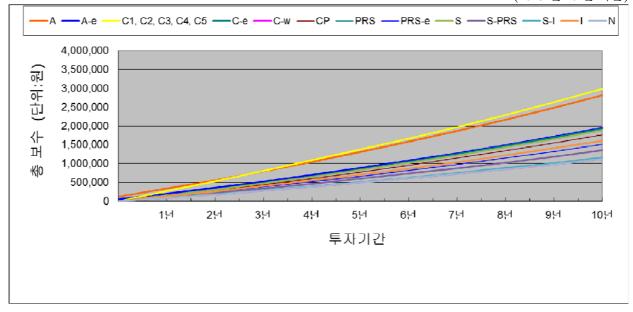
^{※ &#}x27;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설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선취판매수수료는 종류A 및 종류 A-e 수익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S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종류별 총보수 비용 추이 및 총보수 비용이 일치 하는 시점의 선형그래프]

(2015년 10월 기준)



종류 A 및 종류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약 2 년 8 개월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 등의 배분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제9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2)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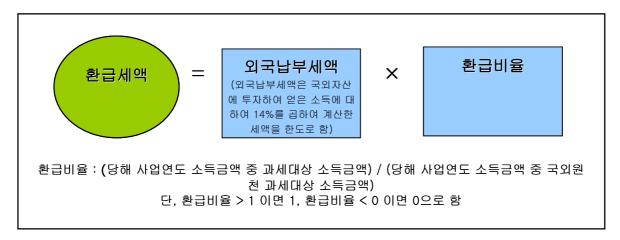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한도 내에서 국세청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연금저축계좌을 통하여 가입한 수익자의 경우, 아래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장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장수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또한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여기서(제2부. 14. 나. 과세 부분)의 "외국상장주식"이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뜻합니다. 한편, "매매·평가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 주식가격의 변동과 관련 없는 매매·평가 손익은 제외되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을 전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수익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때때·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연금저축계좌을 통하여 가입한 수익자의 경우, 아래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 용				
170102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납입요건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어그스럼 이 기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세백중제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				
어그스러지 회계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연금수령)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2018)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5.5% 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어그이스러지 되게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외수령시 과세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8기 및 제7기의 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일)

요약재무정보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150630	20141231	20131231
I.운용자산	55,736,231,704	31,502,405,443	45,833,588,938
증권	55,168,688,016	31,195,350,689	45,372,296,356
현금 및 예치금	567,543,688	307,054,754	461,292,582
II. 기타자산	1,042,321,033	590,481,717	382,149,488
자산총계	56,778,552,737	32,092,887,160	46,215,738,426
II. 기타부채	1,142,285,850	564,501,190	456,143,424
부채총계	1,142,285,850	564,501,190	456,143,424
I. 원본	55,860,586,570	32,581,129,299	63,726,218,376
II. 수익조정금	-425,540,798	4,615,739,104	8,865,454,932
III. 이익잉여금	201,221,115	-5,668,482,433	-26,832,078,306
자본총계	55,636,266,887	31,528,385,970	45,759,595,002
I. 운용수익	2,207,089,079	13,061,505,845	-3,139,448,036
이자수익	3,074,719	7,875,589	12,950,153
매매/평가차익(손)	2,192,873,627	13,049,174,356	-3,152,660,187
기타이익	11,140,733	4,455,900	261,998
II. 운용비용	406,870,330	763,364,904	1,124,762,499
관련회사보수	405,303,254	760,081,974	1,120,696,109
기타비용	1,567,076	3,282,930	4,066,390
III. 당기 순이익	1,800,218,749	12,298,140,941	-4,264,210,535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 매매 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일)

대차대조표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150630	20141231	20131231
I. 운용자산	55,736,231,704	31,502,405,443	45,833,588,938
(1) 현금 및 예치금	567,543,688	307,054,754	461,292,582
현금 및 현금성자산	567,543,688	307,054,754	461,292,582
(3) 유가증권	55,168,688,016	31,195,350,689	45,372,296,356

대차대조표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150630	20141231	20131231
수익증권	55,168,688,016	31,195,350,689	45,372,296,356
II. 기타자산	1,042,321,033	590,481,717	382,149,48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041,757,787	590,007,442	381,332,587
미수이자	563,246	474,275	816,901
자산총계 (I + II)	56,778,552,737	32,092,887,160	46,215,738,426
II. 기타부채	1,142,285,850	564,501,190	456,143,424
해지미지급금	1,054,851,173	511,510,325	381,187,564
수수료미지급금	87,319,917	52,920,455	74,819,230
기타미지급금	114,760	70,410	136,630
부채총계 (I + II)	1,142,285,850	564,501,190	456,143,424
I. 원본	55,860,586,570	32,581,129,299	63,726,218,376
원본액	55,860,586,570	32,581,129,299	63,726,218,376
II. 이익잉여금	201,221,115	-5,668,482,433	-26,832,078,306
이월이익잉여금	-1,598,997,634	-17,966,623,374	-22,567,867,771
당기순이익	1,800,218,749	12,298,140,941	-4,264,210,535
III. 설정조정금	-267,677,313	-1,021,802,557	-1,933,262,280
IV. 해지조정금	-157,863,485	5,637,541,661	10,798,717,212
자본총계 (I + II + III + IV)	55,636,266,887	31,528,385,970	45,759,595,002
[종류(판매)펀드별 순자산]	-	=	-
인디아 증권 자 C1 (주식)	2,378,310,997	872,387,276	27,456,975
인디아 증권 자 A (주식)	47,799,051,643	23,889,808,959	35,646,796,256
인디아 증권 자 I (주식)	-	49,234,381	36,296,850
인디아 증권 자 C2 (주식)	91,091,411	38,418,435	37,761,991
인디아 증권 자 C3 (주식)	46,772,856	10,517,925	423,394,514
인디아 증권 자 C4 (주식)	33,102,066	191,194,384	735,594,997
인디아 증권 자 C5 (주식)	4,919,532,631	6,213,928,853	8,852,293,419
인디아 증권 자 A-e (주식)	141,323,669	97,346,209	-
인디아 증권 자 S (주식)	227,081,614	165,549,548	-
[종류(판매)펀드별 좌수]	-	-	-
인디아 증권 자 C1 (주식)	2,454,655,696	946,605,409	39,861,680
인디아 증권 자 A (주식)	48,212,278,507	25,395,631,374	50,959,477,168
인디아 증권 자 I (주식)	-	50,463,725	50,463,725
인디아 증권 자 C2 (주식)	93,546,198	41,500,399	54,643,871
인디아 증권 자 C3 (주식)	47,855,056	11,324,899	611,310,445
인디아 증권 자 C4 (주식)	33,714,567	205,033,188	1,058,818,799
인디아 증권 자 C5 (주식)	4,670,076,475	5,721,907,734	10,951,642,688
인디아 증권 자 A-e (주식)	133,681,545	77,886,849	-
인디아 증권 자 S (주식)	214,778,526	130,775,722	-
[종류(판매)펀드별 기준가격] 인디아 증권 자 C1 (주식)	- 0.00.00	- 021 (0	- (00.01
` /	968.90	921.60	688.81
인디아 증권 자 A (주식)	991.43	940.71	699.51
인디아 증권 자 I (주식) 인디아 증권 자 N (주식)	1,000.00	975.64	719.27
인디아 증권 자 C2 (주식)	1,000.00	1,000.00	1,000.00
` /	973.76	925.74	691.06
인디아 증권 자 C3 (주식)	977.39	928.74	692.60
인디아 증권 자 C4 (주식)	981.83	932.50	694.73
인디아 증권 자 C5 (주식)	1,053.42	1,085.99	808.31
인디아 증권 자 A-e (주식)	1,057.17	1,249.84	-
인디아 증권 자 S (주식)	1,057.28	1,265.90	-

※ 종류형 펀드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전체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좌수 및 기준가격등은 종류(판매)펀드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단위:일)

			(는 川・ 는)
손익계산서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150101-20150630	20140101-20141231	20130101-20131231
I. 운용수익	2,207,089,079	13,061,505,845	-3,139,448,036
(1) 투자수익	14,215,452	12,331,489	13,212,151
이자수익	3,074,719	7,875,589	12,950,153
기타이익	11,140,733	4,455,900	261,998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2,241,939,197	13,068,006,219	368,689,940
수익증권매매차익	2,241,939,197	13,068,006,219	368,689,940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49,065,570	18,831,863	3,521,350,127
수익증권매매차손	49,065,570	18,831,863	3,521,350,127
II. 운용비용	406,870,330	763,364,904	1,124,762,499
운용수수료	171,094,343	321,190,976	472,159,734
판매수수료	219,665,906	411,589,802	608,402,821
수탁수수료	8,554,708	16,059,532	23,607,975
사무수탁수수료	5,988,297	11,241,664	16,525,579
감사인보수비	1,036,406	2,090,000	2,090,000
기타비용	530,670	1,192,930	1,976,390
III. 당기순이익 (I-II)	1,800,218,749	12,298,140,941	-4,264,210,535
* 총좌수	55,860,586,570	32,581,129,299	63,726,218,376
* 당기순이익(좌당 또는 1000 좌당)	32.23	377.46	-66.91

[※] 종류형 펀드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단순계산값(순이익 합계/종류(판매)좌수 합계) 입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천)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빌	날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30101 -	95,763,183	95,763,183	6,382,863	4,805,729	40,326,077	30,203,200	61,819,969	70,365,712	
20131231									
20140101 -	61,819,969	61,819,969	9,733,891	9,197,378	40,440,895	36,508,708	31,112,965	34,508,638	
20141231									
20150101 -	31,112,965	31,112,965	36,752,032	38,971,857	15,474,223	16,567,794	52,390,775	53,517,028	
20150630									

◇ 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자투자신탁 C1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30101 -	80,881	80,881	88,169	61,445	129,189	92,061	39,862	50,265
20131231								
20140101 -	39,862	39,862	1,140,565	1,007,133	233,821	195,204	946,605	851,790
20141231								
20150101 -	946,605	946,605	2,411,280	2,343,203	903,230	865,126	2,454,656	2,424,682
20150630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빌	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30101 -	76,041,684	76,041,684	3,434,723	2,435,822	28,516,929	20,439,418	50,959,477	58,038,087	
20131231									
20140101 -	50,959,477	50,959,477	7,301,656	6,525,196	32,865,502	27,788,552	25,395,631	29,696,121	
20141231									
20150101 -	25,395,631	25,395,631	35,772,261	35,535,072	12,955,614	13,024,754	48,212,279	47,905,949	
20150630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30101 -	50,464	50,464	0	0	0	0	50,464	50,464
20131231								
20140101 -	50,464	50,464	0	0	0	0	50,464	50,464
20141231								
20150101 -	50,464	50,464	0	0	50,464	54,579	0	-4,115
20150630								

◇ 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자투자신탁 C2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30101 -	1,761,672	1,761,672	94,197	67,510	1,801,225	1,334,703	54,644	494,479
20131231								
20140101 -	54,644	54,644	69,709	53,694	82,853	65,066	41,500	43,271
20141231								
20150101 -	41,500	41,500	116,301	112,963	64,255	64,387	93,546	90,076
20150630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C3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급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30101 -	2,115,656	2,115,656	1,696,532	1,257,397	3,200,877	2,175,106	611,310	1,197,946
20131231								
20140101 -	611,310	611,310	40,582	29,713	640,568	462,579	11,325	178,444
20141231								
20150101 -	11,325	11,325	64,129	64,707	27,599	28,087	47,855	47,944
20150630								

◇ 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자투자신탁 C4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30101 -	184,559	184,559	1,274,562	895,419	400,302	280,288	1,058,819	799,690
20131231								
20140101 -	1,058,819	1,058,819	605,198	438,028	1,458,984	1,232,061	205,033	264,786
20141231								

20150101 - 20150630	205,033	205,033	32,629	33,087	203,948	201,368	33,715	36,752
◇ 피델리티 '	◇ 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자투자신탁 C5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빌		환미	•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101 - 20131231	16,585,764	, ,	327,197	264,525	5,961,318	4,889,546	10,951,643	11,960,742
20140101 - 20141231	10,951,643	10,951,643	883,296	891,756	6,113,031	5,981,107	5,721,908	5,862,292
20150101 - 20150630	5,721,908	5,721,908	340,121	360,110	1,839,999	1,953,755	4,670,076	4,576,282
◇ 피델리티 '	인디아 증권 지	-투자신탁 A	e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설정(빌		환미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414 - 20141231	0	0	172,237	204,928	94,350	109,230	77,887	95,698
20150101 - 20150630	77,887	77,887	132,456	140,631	95,879	99,991	133,682	137,744
◇ 피델리티	인디아 중권 지	투자신탁 S	(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빌	ː행)	환미	H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40507 - 20141231	0	0	222,648	263,642	91,873	109,640	130,776	154,002
20150101 - 20150630	130,776	130,776	190,276	202,031	139,700	146,503	214,779	219,730

주) 기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일)

	(단기, 판)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C5 (주식)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20150101 - 20150630	448,046,850 / 448,019,957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A-e (주식)	
기간	비고
20150101 - 20150630	19,217,199 / 19,216,430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S (주식)	
기간	비고
20150101 - 20150630	33,426,681 / 33,425,67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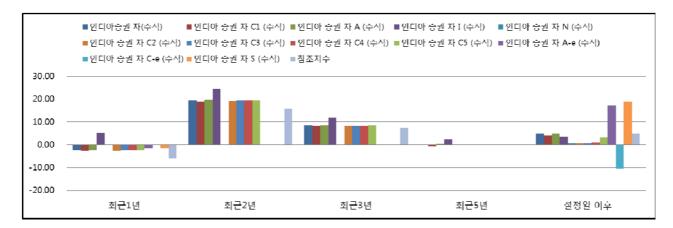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과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1,11,14)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연도	2014.12.01 ~	2013.12.01 ~	2012.12.01 ~	2010.12.01 ~	2007.05.31 ~
	2015.11.30	2015.11.30	2015.11.30	2015.11.30	2015.11.30
인디아증권 자(주식)	-2.40	19.56	8.59	-0.01	4.78
인디아 증권 자 C1 (주식)	-2.85	18.99	8.07	-0.48	4.24
인디아 증권 자 A (주식)	-2.37	19.59	8.62	0.03	4.87
인디아 증권 자 I (주식)	5.13	24.63	12.00	2.26	3.56
인디아 증권 자 N (주식)	0.00	0.00	0.00	0.00	0.65
인디아 증권 자 C2 (주식)	-2.76	19.12	8.19	ı	0.81
인디아 증권 자 C3 (주식)	-2.66	19.24	8.29	ı	0.89
인디아 증권 자 C4 (주식)	-2.56	19.36	8.40	ı	1.00
인디아 증권 자 C5 (주식)	-2.47	19.48	8.51	ı	3.09
인디아 증권 자 A-e (주식)	-1.74	ı	1	ı	17.17
인디아 증권 자 C-e (주식)	-	ı	-	ı	-10.44
인디아 증권 자 S (주식)	-1.72	ı	1	ı	18.89
참조지수	-5.94	15.70	7.28	-0.23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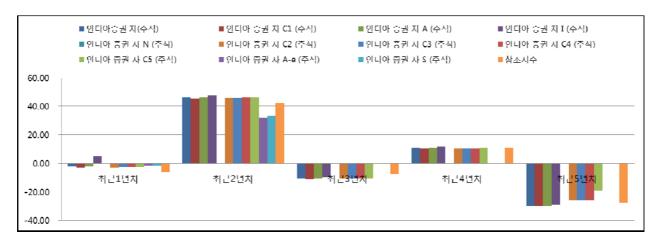
- 1) 참조지수=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 하였음, 다만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연도	2014.12.01 ~	2013.12.01 ~	2012.12.01 ~	2011.12.01 ~	2010.12.01 ~
	2015.11.30	2014.11.30	2013.11.30	2012.11.30	2011.11.30
인디아증권 자(주식)	-2.40	46.46	-10.44	10.89	-29.60
인디아 증권 자 C1 (주식)	-2.85	45.75	-10.85	10.38	-29.94
인디아 증권 자 A (주식)	-2.37	46.49	-10.41	10.93	-29.56
인디아 증권 자 I (주식)	5.13	47.76	-9.57	11.93	-28.88
인디아 증권 자 N (주식)	0.00	0.00	0.00	0.00	0.00
인디아 증권 자 C2 (주식)	-2.76	45.93	-10.77	10.50	-25.66
인디아 증권 자 C3 (주식)	-2.66	46.08	-10.68	10.61	-25.65
인디아 증권 자 C4 (주식)	-2.56	46.22	-10.59	10.72	-25.58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연도	2014.12.01 ~	2013.12.01 ~	2012.12.01 ~	2011.12.01 ~	2010.12.01 ~
	2015.11.30	2014.11.30	2013.11.30	2012.11.30	2011.11.30
인디아 증권 자 C5 (주식)	-2.47	46.36	-10.50	10.82	-18.99
인디아 증권 자 A-e (주식)	-1.74	31.82	ı	ı	ı
인디아 증권 자 S (주식)	-1.72	33.51	ı	ı	
참조지수	-5.94	42.33	-7.77	10.91	-27.81



- 1) 참조지수= MSCI India Index with an 8% cap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함.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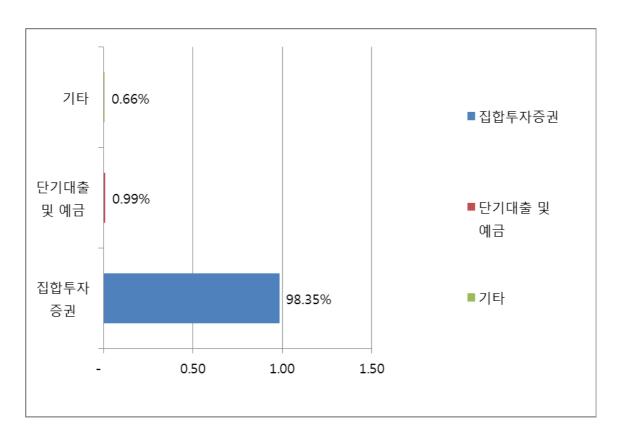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 피뎈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u> </u>	277 8 27 17 27 (1 7)											
	투자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단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년/1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한국 원	0	0	0	39,803	0	0	0	0	0	400	268	40,471
안국 전	(0.00)	(0.00)	(0.00)	(98.35)	(0.00)	(0.00)	(0.00)	(0.00)	(0.00)	(0.99)	(0.66)	(100.00)
합계	0	0	0	39,803	0	0	0	0	0	400	268	40,471
됩 <i>기</i>	(0.00)	(0.00)	(0.00)	(98.35)	(0.00)	(0.00)	(0.00)	(0.00)	(0.00)	(0.99)	(0.66)	(100.00)

주)()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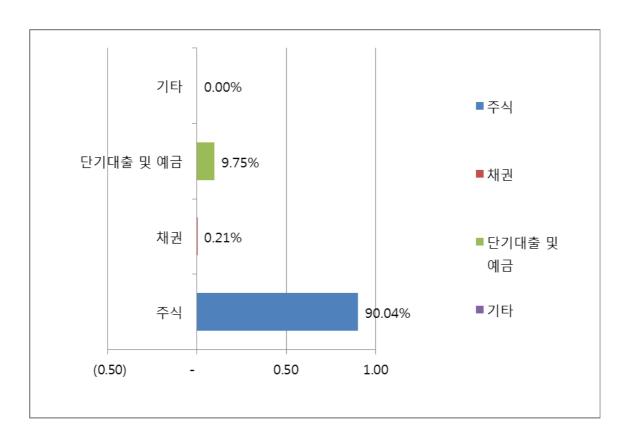
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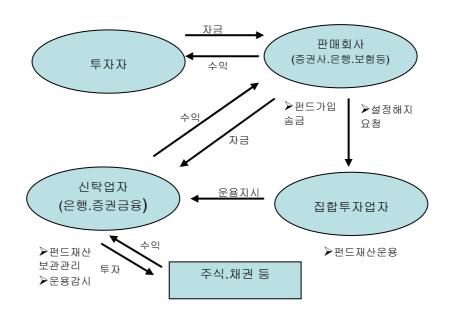
◇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투자	증권		파생	상품		특별	자산	단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인도	35,888	84	0	0	0	0	0	0	0	1,477	0	37,449
루피	(89.55)	(0.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69)	(0.00)	(93.45)
한국	0	0	0	0	0	0	0	0	0	2,427	0	2,427
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6)	(0.00)	(6.06)
미국	195	0	0	0	0	0	0	0	0	3	0	198
달러	(0.4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49)
	36,083	84	0	0	0	0	0	0	0	3,908	0	40,074
합계	(90.04)	(0.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75)	(0.00)	(100.00)

주)()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04520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6 층, 전화번호: 3783-0901 인터넷홈페이지: www.fidelity.co.kr
회사연혁	2002 년 8 월 설립되었으며(설립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2003 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 년 12 월 8 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 년 12 월 10 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년 2 월 4 일자로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 및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15 년 10 월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150 억원이며 FIL Limited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가회사의 주식을 각각 약 41.18% 및 약 58.82%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ternational의 폭넓은 해외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나. 주요 업무

(1)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다)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 의무 및 책임

-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계무성	상태표		요약 포괄손약	식계산서	
행 목	2015.03.31	2014.3.31	中	2015.03.31	2014.3.31
 현금질환문성과상 	2,931	1,620	[, 영업수익	19,312	18,849
Ⅱ. 네치군	173,91	19,206	I, 영경남용 I, 영경이오	19,376	18,677
工, 기본상공	974	მეს	工, 영업이인	- 63	271
II. 에스트 II. 지수상된 II. 지수상된 II. 이용됩인성 III. 이용됩인성과상 III. 이용됩인성과상	2,596	3,277	T. 연원으수의 T. 연원이다	1,388	-
도, 선급별인세	68ā	162	II 결정세계 함 II 결정 세계 함께함(함이 교 I. 현원들지 함		143
그 유행과산	ර සින්	848	그, 별인세비용차관된순이의	1,218	143 128
VE, 이연행인세과산	842	1,119	II, 별인세비용	2:.7	āl
UL 대출되면	619	1,0		799	
자산 총계	27, 452	27,344	세후기타포괄손의	-	-
[기타부기	1,11	4,892	당기총포괄손의	799	76
부재 총계	4,007	4,592			
[, 과본글	15,000	79,222			
Ⅱ. Æ덕군	171	-75			
표, 이익임연균	8,2,6	375.7			
자본 총계	23, 446	22,752			
부계와자본 총계	27, 452		리를 되었습니다.		

후) 상기 요약 과무제표는 한국가릭국제회기기준(X-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15년 11월말 기준, 단위: 억좌)

7	집합투자기구		중	권		부동산	특별자산	ㅎ하기시	MMF	총계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ተያብ	국일사진	근접시간	IVIIVIE	ठ या
	수탁고	5,664	0	0	10,147	ı	-	-	-	15,81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1)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1990년 설립되어 자산운용업무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FIL의 일본 제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조사, 투자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2)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설립일	1990년 12월 31일
회사주소	8 Marina View, # 35-06,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전화번호: (65) 6511 2200 팩스번호: (65) 6536 1960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신탁업자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2층
	전화번호: (02) 2004-0000
	홈페이지: www.hsbc.co.kr

(2)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라)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마)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바) 증권 상환금의 수입
- (사)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업무위탁

당해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자산을 제외함)
- (나)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4) 의무 및 책임

(가) 신탁업자의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나) 신탁업자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HSBC 빌딩 12층
	전화번호: (02) 3771-9800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 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 (다) 집합투자업자가 위임한 기타 업무

(3)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전화번호: (02) 399-3350
	홈페이지: <u>www.koreaap.com</u>

회사명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전화번호: (02) 3215-1450 홈페이지: www.bond.co.kr

(2) 주요 업무

- (가)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 (나) 기업신용평가정보 서비스
- (다) 채권지수 서비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 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각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⑥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 ⑦ 위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②,③,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이하 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가.(1)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정족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

-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가)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라)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자투자신탁과 1 개의 모투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 좌	찬성 500/반대 500	200 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 좌	찬성 600/반대 400	100 좌	찬성 60/반대 40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C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마) 수익자총회의 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봅니다.

(바) 수익자명부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함),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 (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 내용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집합투자업자가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와 관련하여 열람이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 91 조 및 법 시행령 제 95 조에 따른 제한 하에서 제공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입니다.

- (1)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터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중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중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중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중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이 증권신고서 (등록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의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④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위③ 및④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우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나)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경제 및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 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집합투자업자가 자투자신탁 수익자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중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 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거래	피델리티는 펀드, 계정 또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최적의 거래체결 방침(best execu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회사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피델리티는 중개회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거래 체결을 수행하게 될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거래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0 (2.71-11)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 거래 규모와 종류• 유동성• 거래 효율성• 영업/운영 현황(capital utilization)• 수수료율 또는 스프레드의 적정성• 결제청산(clearance) 또는 결제능력• 중개회사의 신용도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E h] O l E l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편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위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